

‘관계성’ 으로서의 섹슈얼리티 : 성, 사랑, 권력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강간’ 과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최기숙¹⁾

국문초록

18·19세기의 야담집에 수록된 ‘강간’ 과 ‘간통’ 의 서사는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남녀 간의 감정적 교류에서 나아가 이것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 및 그들이 기반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구현한다.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서 강간은 명백한 범법 행위로 간주되지만, 피해자 여성의 입장을 소거 시킴으로써 이를 정당화하거나 성적 충동을 긍정하면서 이를 ‘사랑’ 으로 호도하고, 상호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그 폭력성을 희석화시키기도 했다. 이는 당대적 지배 이념에 포섭된 서술 주체와 서술 시가의 권력성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폭력의 희생이 되는 대상들은 신체적 약자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로 확대되었다. 피해자 여성이 강간을 천생연분이나 인연론으로 수용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생존을 연장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폭력’ 이 ‘사랑’ 이나 ‘운명’ 으로 환치되는 형식은 여성의 신체가 공동화되고 소외되었던 당대적 현상을 반영한다.

또한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 교류나 쾌락을 중심으로 한 남녀관계는 개인적 ‘사랑’ 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범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당사자 여성에게 처벌이 집중되었다. 이는

1) 이 논문은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KRF-2002-075-A00063).

상호성에 근간한 '사랑'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었음을 입증하며, 성에 대한 불평 등한 인식이 지배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의 영역을 차압당한 '관기'나 '궁녀'의 개인적 사랑은 '간통'이라는 불명예의 대상으로 지목됨으로써,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사랑의 경험'을 '범법'의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적 담론은 주로 아담의 주요 향유층이었던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기술된 결과로서, 섹슈얼리티가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던 여성의 음성이 배제된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서술 시각에 의해 통제되는 이야기의 논리는 현실의 특정한 세계 인식의 내용을 문학의 형식으로 함유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취향과 유희의 소비 수단으로 설득하는 문화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 핵심어 : 아담, 18·19세기, 성, 사랑, 간간, 간통, 불륜, 권력

1. 서론

조선시대의 서사 문학에 나타난 작중 인물들의 '섹슈얼리티'의 문제는 남녀간 애정 서사에 수반되는 부수적 요소로 간주되거나, 이를 구성하는 진재로 이해됨으로써 중심적 관심 영역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다. 서사 문학사에서 작중 인물들의 '성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담론은 '애정' 서사로서 이해되어 왔는데, 이는 '애정'이나 '사랑'이라는 어휘가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보편의 정서적 영역이자 경험적 영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남녀간의 관계는 사회,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함의를 가지며, 이것이 인간을 감정의 주체로서 이해하게 만드는 사랑의 정서적 체험으로 이해되거나, '혼인'이라는 제도와 관련을 맺을 경우, 보다 다원적인 의미 영역을 확보한다. 예컨대 조선 시대에 혼인 이외의 애정 관계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처첩제도나 기생제도는 '섹슈얼리티'가 권력적 역학 관계 속에서 의미를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의 처첩제나 기생제도는 가부장의 권력을 행사하는 남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가족 제도에 종속되어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한다. '정절' 이데올로기 역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지배했던 '성' 정치의 핵심적 내용이었던 것이다."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남녀간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교환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이것을 체험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 및 그들이 기반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구현하기 마련이다." 이성간의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만남은 단지 관계성의 발견과 지속의 문제를 떠나 주체가 사회화 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영역을 확보한다. '사랑'을 예로 들 경우, 이는 섹슈얼리티의 관계성을 매개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주체의 자기 인식과 이것의 사회화에 관한 사적이고 공적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사랑'은 경험 주체나 대상을 지배하는 사회적 통념이나 정치적 규약들로부터 간섭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함의는 역사적으로 변모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방식도 사회와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18·19세기의 야담집⁴⁾에 제시된 '성'의

- 2) 조선시대의 정절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
정출현, 「〈향량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집, 한국 고전여성문학회, 2001.
강명관, 「『삼강행실도』-야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 한국 고전여성문학회, 2002.
줄 고, 「'성적' 인간의 발견과 '육망'의 수사학」, 『국제어문학』 26집, 국제어문학회, 2002@.
- 3) 예컨대 니콜라스 루만은 '사랑'을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의 매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기호'로 접근하고 있다(Niklas Luhmann, *Love as Passion: The Codification of Intimacy*, Standford University, 1982, 2장).
- 4) 이 글에서는 18·19세기의 대표적 야담집으로 거론되는 『기문총화』(김동욱 역, 아세아문화사, 1999. 이는 연세대 소장 4책본이다), 『청구야담』(시귀선·이월영 역, 한국문화사, 1995. 이는 국립중앙대도서관본이다. 이와 아울러 『주해 청구야담』 I·II·III권 『최웅 외 편, 국학자료원, 1996. 이는 규장각 소장 국문본이다.』을 참고했다), 『동야회

담론화 방식과 그것들의 의미론적 영역에 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간 '성' 과 '사랑' 이라는 주제적 측면에서 '야담' 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은 데, 그 경우에도 '사랑' 보다는 혼인으로 인한 여성의 신분상승 욕망에 관심을 갖거나,⁵⁾ 배우자를 선택하는 여성의 '지감(知鑑)' 능력에 주목하고,⁶⁾ 각 텍스트의 변이 양상⁷⁾ 및 소설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⁸⁾에서 조명한 것들이 대부분이다.⁹⁾ 그 결과 남녀간의 섹슈얼리티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성' 과 '사랑' 의 권력성과 제도적 의미를 탐색하려는 노력은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과 사랑이 '섹슈얼리티' 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대한 표현 방식, 독자나 서술자의 관심 영역,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사랑이 경험되는 구체적인 형태나 그것이 수반하는 사회

집』(상·하권, 정명기 편, 보고서, 1992. 이는 大阪府立圖書館 소장본이다), 『동패락 송』(김동욱 역, 아세아문화사, 1996. 이는 천리대 소장본이다), 『천예록』(김동욱 외 역, 명문당, 1995. 이는 천리대 소장본이다), 이우성·임형택 편역의 『이조한문단편집』 상·중·하(일조각, 1973, 1978. 이하 이 책은 '이'로 약칭), 『설화문학총서』 1-2권(김동주편역, 전통문화연구회, 1997. 이하 이 책은 '설'로 약칭) 등을 참고했다. 『계서야담』은 『기문총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자료집으로 확인되었으므로(정명기, 「야담 연구에서 자료의 문제」,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I, 보고서, 2001, p.33)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1907-1919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은천미』(정명기 역, 보고서, 2000. 이는 김동욱 교수 소장본으로 단구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를 포함시켰다. 본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잘못된 한자는 바로잡아 제시하였다.

- 5) 이신성, 「『천예록』 소개 여성인물야담의 성격에 대하여」, 정명기 편, 『야담문학연구의 현 단계』 2, 보고서, 2001.
- 6) 이신성, 「〈일타홍 이야기〉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정명기 편(2001-2권).
_____, 「〈일타홍 이야기〉의 여성지인담 성격 연구」, 정명기 편, 『야담문학연구의 현 단계』 3, 보고서, 2001.
- 7) 강영순, 「〈옥단춘전〉의 지인소설적 성격 연구」, 정명기 편(2001-3권).
- 8) 정명기, 「〈정향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 연구」, 정명기 편(2001-3권).
- 8) 이강욱, 「조선 후기 사대부일화가 조선 후기 야담계일화 및 소설로 발전하는 한 양상' 사대부-기생 관계담'을 중심으로」, 정명기 편(2001-3권).
- 장진옥, 「야담소제 신소설의 개작양상에 나타난 여성수난과 그 의미」, 정명기 편(2001-3 권).
- 9) 이는 사랑을 사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의 보편적 경험 내용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적 문제 및 이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성찰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과 사랑의 관련성, 그것이 제도와 권력을 매개로 행사되는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성이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방식, 사랑이 특정한 사회,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위반과 금지의 대상으로 제도화되는 방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당 시기에 ‘성’과 ‘사랑’의 문화적 이해에 관한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한다.

2. ‘성’과 ‘사랑’의 언어 정치

1) 강간의 수사학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는 상호성이 배제된 가운데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폭력적으로 구성되고 행사되는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여성에게 성관계를 가하는 행위¹⁰⁾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사전적 정의에 의한 ‘강간(強姦)’에 해당된다. 법적으로는 이는 ‘강요·강제에 의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교’¹¹⁾로 정의되는데, 개인의 육체는 사적인 전유물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재규정됨을 보여준다.

① “그래서 옷과 허리띠로 그녀의 사지를 묶고 강간을 하고는 묶은 손발을 풀어주었사옵나이다(乃以衣帶 縛其四肢而強姦之 仍解其縛).” (『기문총화』3:312)

② 선비는 그 계집아이를 들이여 몹시 총애하느라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몰랐다(納之甚寵 忘其歸). (『청구야담』 41화, p.202/204)

10) 신기철·신용철 편, 『새우리말큰사전』 상, 삼성출판사, 1989, p.84.

11) 이 정의는 성에 대한 가학·피학적 정의, 곧 강요·강제에 의한 성교가 교감적일 수 있음을 가정한다. 강간 행위는 여성의 성이 사회적으로는 탈취되거나 팔리고, 구매되고, 물물 교환되거나, 남에 의해 교환되는 것임을 의미한다(캐서린 맥키런, 「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케티 콘보이·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탠베리 편,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경하의 번역, 한울, 2001, pp.57-59).

③ 이완은 그녀와 더불어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公因與之押 與之共宿). (『기문총화』5:533, p.273)

④ 드디어 업복은 마음껏 음탕하게 회롱하여 추악한 형상을 지극하게 하였다(業福乃恣意淫弄 極其醜狀). (『청구야담』, 115화, p.496/198)

⑤ 만옥이 손으로 만져보니 젊은 미녀였다. 탕정(蕩情)을 이기지 못하여 급히 운우지락을 즐겼다(不勝蕩情 急說雲雨之樂). / 만옥은 즐거이 욕심을 풀었다(仍快暢所欲). (『양은천미』 11화, p.94-96/98)

⑥ 그 처녀는 비록 매우 당황하고 놀라고 겁이 났으나, 여자의 유약한 자질로 어찌 강장한 기운을 당해낼 수 있으리오.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짹하자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동방의 화족을 밝히는 한 마당의 기회였던 것이다(其處女雖其愉悅驚懼 以若柔弱之質 怎當強壯之氣 不敢發聲 俯首從命 偶是東房花燭一場之期也). (『청구야담』 100화, p.453/456)

⑦ 어느날 밤 옆집에 살고 있는 모감이 담을 넘어 침실로 들어와 억지로 겁탈하려 하였다. 과부는 죽기를 한하고 굳게 저항하니(一日夜 隣居某甲 踰牆入廨內 欲強劫之. 寡女抵死牢拒) (『청구야담』 108화, p.478/480)

⑧ 원으로 하여금 겁간하게 하려는 심산이었다(將令守劫奸). (『설』 1권:25화, pp.177-179)

⑨ "(...) 길에서 소복(素服)한 여인(女人)을 만나거든 반드시 그 여인(女人)을 얻어야 가(可)히 죽기를 면(免)하고 과거(科擧)를 하리라." 하더라. (『주해청구야담』 I 권:권지육 11화, p.452)

위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육체적으로 가하는 성의 일방적이고 폭력인 행사는 '강간'이라는 어휘를 통해 지시되었다. '강간'은 '強姦' (①)이나 '劫姦' (②)이라는 직접적인 용어로 표현되지만, 이끌어 동침을 한다거나 (③ 與之押 與之共宿)¹²⁾, 남성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쾌락을 충족시키는

12) 이 이야기는 '강간'과 '간통'의 경계가 모호하다. '강간'과 '간통'의 경계는 '여성' 인물의 판단에 의거하지만, 여기서는 여성 인물의 입장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불분명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 이야기는 2절의 '간통'의 담론에서도 함께 논의하기

차원에서 표현되었다(④ 恣意淫弄 極其醜狀 ⑤ 不勝蕩情 急說雲雨之樂, 仍快暢所欲). 여성 인물에게 행사한 남성 인물의 성적 행위가 폭력적임은 거부나 저항, 자결 등 여성 인물의 반응을 통해 명백해진다.¹³⁾ 그러나 한편에서는 남성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강간’ 행위를 상호적 합의에 따른 ‘화간(⑨ 和姦)’으로 표현함으로써 폭력성의 의미를 희석화시키기도 했다. ⑥에서는 강간의 폭력성을 ‘동방의 화촉(東房花燭)’으로 미화함으로써, 남녀간의 섹슈얼리티의 관계가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남성 인물의 강간 계기가 밝혀진 경우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은 ‘시각적 아름다움’에 의해 촉발된 성적 충동이다(①-⑤). 성 충동에 대한 옹호는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성적 충동을 ‘자연적인 것’으로 설득하거나, 남성의 성욕이란 자기 절제에 의해 통어되는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혹하는 ‘타자’의 문제일 뿐이라는 남성 중심적 성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¹⁴⁾ 그런데 위에서 남성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성 관계는 계집종과 딸과 함께 사는 ‘과부’라든가(⑦) 남편이 부재한 ‘유부녀’(⑧) 등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여성)에게 가해진 육체적 폭력의 행사로 나타난다. 특히, ⑧과 ⑨에서는 남성이 부와 출세를 위해 여성의 ‘성’을 이용하려 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정체성이 ‘사취’되는 파행성을 보여준다. 이는 ‘강간’이 신체적인 약자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성이라는 권력적 관계 역학 속에서 행사되었음을 의미한다. 상호 교감이나 친밀감이 전제되지 않은 섹슈얼리티의 관계에서 여성은 신체적, 사회적 약자로서의 불이익을 ‘개인’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반면, 남성은 이를 ‘자연스러운 욕망’의 표현으로 설득하고, ‘상호적인 사랑’으로 호도하며, ‘혼인’으로 귀결시킴으로써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통로를 부여받았던 것이다.

로 한다.

13)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이 결여된 미성년의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는 형태로 제시됨으로써 남성 인물의 폭력성의 의미가 희석화 되기도 한다(④).

14) 해당 일화와 분석에 관해서는 줄고(2002@), pp.77-82. 참조.

2) 간통의 수사학

조선왕조는 화민성속(化民成俗), '부식강상(扶植綱常)'의 기치 아래 수차례 『삼강행실도』류를 간행하면서 이데올로기의 공세를 통한 지배 체계 모니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였다.¹⁵⁾ 이 중에서도 열녀 규범은 가부장제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여성들의 절대 규범으로서 호소되었으며, 그에 따라 혼인한 여성이 남편 이외의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한 범법 행위로서 간주되었다. 이는 기생이나 처첩제도를 통해 남성의 성적 자율성을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혼인한 여성은 남편 이외의 남성을 사랑할 수 없음은 물론 만날 수 있는 권리나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았다. 그 경우에는 '간통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는데, '간통'의 범제화나 사회적 규제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가족 간의 윤리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라기보다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지배 형식으로서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⁶⁾ 간통은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한 일이었을 뿐더러, 불결하고 더러운 '비위생적'인 행위로 간주되었다. '음녀(淫女)'나 '음란(淫亂)', '부정(不淨)', '부정(不貞)' 등의 용어는 부부 관계 이외에 행사되는 성적 관계를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위생적' 관념을 투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들은 모두 '여성'에게만 전용된 것으로서, 정절 관념이 '여성'에게만 부과되었던 조선시대의 성 정치가 언술적으로 표현된 사례이다.

① 어떤 통인 하나가 그 기생과 더불어 어지럽게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有一知印與其妓狼藉行淫). (『기문총화』2:220)

② 통인이 몰래 정태화가 마음에 둔 기생과 더불어 침실에서 정을 통하고 있

15)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p.164.

16) 특히 신분적 상하관계의 문제가 증첩된 경우, 이는 보다 심각해졌다.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으로 지칭)에는 여종과 간통한 관리/사인(士人)에 대해 파직을 요청하고 처벌을 내리라는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이 기록되어 있다(경종 1년 2월 15일(병오), 『실록』 41집 p.149; 영조 4년 10월 12일(기축), 『실록』 42집 p.87 / 경종 1년 6월 4일(계해), 『실록』 41집 p.162).

다고 비장이 급히 아뢰는 것이었다. 정태화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게 어찌 내게 보고할 일이나? 실은 내가 통인이 가까이 지내는 기생과 정을 통한 것이니라. 통인이 어찌 감히 내가 마음에 둔 기생과 간통을 하겠느냐?” 하고는 끝내 불문에 부쳤다(知印潛與其所哂妓 淫於寢房 裨將急告之. 公笑曰, 此其告我者耶? 我實淫其所押. 渠豈敢奸我所哂乎?) (『기문총화』5:545)

③ 삼년상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그 아내 황씨가 실행하여 한 계집아이를 낳았다(服闋始歸 則妾黃氏 失行產一女). (『청구야담』 103화, p.462/465)

④ “(...) 저 계집은 틈을 타 아까 죽은 사내와 몰래 간통을 하고 도리어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소(而彼娥隨隙 潛奸於娥者所死男子 反欲害我 非一非再). (...)” (『기문총화』2:255)

⑤ 그 중이 그녀를 끌어안고 별별 음란한 짓거리를 다했다(則其和尚摟抱其女子 淫戲無所不至). / 그리고는 다시 중과 더불어 한바탕 음란한 짓거리를 해대더니 벌거벗은 몸으로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서로 껴안고 눕는 것이었다. 이때 선비는 처음 올 때 간음하려던 마음이 구름과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고 분개하는 마음이 갑절로 일었다(又與僧一場淫戲 而裸體同入衾中 相抱而臥. 此時 儒生初來欲奸之心 雲消霧散 而憤慨之心倍激矣). / “음탕한 아내가 그 중을 보고 탐을 내다가 드디어 그 중과 간통을 하였습니다(淫婦見而欲之 遂與通奸矣).” (『기문총화』 2:205)

⑥ 이윽고 석반(夕飯)을 드리고 밥먹은 후(後)에 인(因)하여 촛(燭)을 밝히고 상대(相對)하여 담소(談笑)를 이윽히 할 새 어깨를 겹치고 무릎을 대어 이미 임의(任意) 희참(戲謔)하다가 서로 더불어 취침(就寢)하니 그 곡절(曲折)을 알지 못할러라(『주해 청구야담』 I 권:권지오 6화(匿屍身海倅僂恩))

⑦ 공이 젊었을 때 향간의 한 여자와 서로 좋아하였다. 매일 밤 몰래 가서 그녀의 남편이 없는 틈을 엿보아 보면 몰래 여자와 정을 통하고 돌아왔다(公少時有與一間婦相好者 每夜潛往瞰其夫不在 輒與之 歡樂而歸). (『양은천미』 12화, p.100)

⑧ 그 사람은 원래 탕자의 솜씨에 능숙한지라, 난새가 얻어지고 봉새가 거꾸러질 듯이 그 취미를 곡진히 하여 부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희롱했다(其

人素慣宕子手段 顛鸞倒鳳曲盡其趣. 弄得婦人魂不附體. (『동야회집』 권지십사
11화: p.635)

위에서 '간통'으로 간주된 사례는 통인과 기생(①, ②), 유부녀와 성인 남성(나무꾼, 중, 선비, 무부(武夫))(③-⑦)로서, 부부 관계 이외의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는 '相好' (⑦)를 제외하고는 '行淫' (①), '淫' (②), '失行' (③), '潛奸' (④), '淫戲', '通奸' (⑤), '戲謔' (⑥), '歡樂' (⑦) '宕子手段', '弄' (⑧) 등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음란하다'거나 '유회적'이라는 폐락성을 중심으로 표현됨으로써 이에 대한 강한 거부와 비판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기혼 사실이 밝혀진 데 비해, 남성 인물의 혼인 여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이와 아울러 '간통'의 행위는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 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 규정된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에 따라 '타자화'된 시선에 의해 기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들의 관계를 관찰하고 전달하는 인물은 여성 인물의 남편(③, ④)이거나 그 주변인(통인:①, ②), 그 여성을 강간하려던 남성(⑤), 서술자(⑥, ⑧)로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서술한 경우는 찾을 수 없다.

위의 사례들은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남녀간'의 '폐락적 유희'를 허용하지 않았던 당대의 성(性)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행위 당사자 쌍방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감정적 거부를 표현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처벌을 받는 인물은 여성 인물들로 제한된다. 남성 인물들은 '참회'와 '용서'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받거나, 상대 여성을 스스로 처벌함으로써 도덕의 심판자로 자리바꿈하는 과정을 보여준다.¹⁷⁾

17) 이에 관해서는 3장에서 상술한다.

3. '성'의 권력성과 '사랑'의 제도성

'성'과 '사랑'이 담론화되는 지점을 살펴보기 위해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남녀간의 '관계성'에 주목하기로 한다. '성'과 '사랑'은 주체-개인이라는 의미 영역 안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각기 다른 의미론적 영역을 확보해 왔다. 오늘날의 의미에서 '강간'으로 간주되는 이야기들이 18·19세기 야담집에서 종종 '애정담'이나 '혼인담'으로 이해되는 것은 '성'의 권력성과 '사랑'의 제도성에 대한 이해의 범주가 시대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되었음을 반영한다.

1) 폭력으로서의 성 정치

사회, 역사적으로 '강간'은 폭력에 속하기 이전에 풍기문란의 범주에 속했으며, 개인적 상처이기 이전에 불법적인 쾌락이었다. 강간은 음란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¹⁸⁾

그러나 '강간'은 성에 대한 육체적 소유 욕망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태도로서, 개인의 육체를 상해할 뿐 아니라 그 정신성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¹⁹⁾ 강간의 행위자는 남성으로 제한되는데, 여성이 그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에서 남녀간의 권력적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파행적 사례이기도 하다.

18) 조르쥬 비가렐로, 『강간의 역사』, 이상해 역, 당대, 2002, pp.50-51.

19) 조르쥬 비가렐로는 강간이란 난폭함의 결과라는 점에서 다른 폭력에 의한 상처와 동일하지만, 그 상처가 희생자에게 수치심을 각인시키고 인격을 훼손시키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또다른 상처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그에 비해 폭행을 한 자는 이러한 인식 자체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욕망을 해소하는 그 순간 이를 망각하고 만다는 것이다. 희생자는 바로 이 더럽혀졌다는 생각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고, 고소를 망설이게 되지만, 주변인은 오히려 그에 대해 비난하게 된다(조르쥬 비가렐로, 2002, pp.41-42).

횡성 읍내에 사는 한 여자가 있었다. 시집을 간 뒤에 홀연 한 장부가 그녀의 방에 들어와서는 겁탈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온갖 방법으로 항거를 하였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장부는 매일 밤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 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녀에게만 보였다. 비록 그녀의 남편이 옆에 있어도 어렵지 않게 같이 앉아 있다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 장부와 교합을 할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워 그 아픔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장부가 귀물임을 알았으나 물리칠 방법이 없었다(橫城邑內有女子 出嫁之後 忽有一箇丈夫 入來而恠奸. 其女百船拒之(而)無奈何矣. 每夜必來 他人皆不見. 而渠獨見之 雖其夫在傍 而無難同坐而同寢. 每交合之時 通楚不可堪. 其女知其爲鬼祟 而無計却之). (『기문총화』2:235)

위의 사례는 '겁간(恠奸)' 당하는 여성의 육체적 고통과 공포를 표현한 것으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겁간에 대한 공포와 무력함을 시사한다. '강간'은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자의식을 배제한 채 여성을 오직 육체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고, 여성에 대한 신체적 지배 형식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었다.

그런데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서 '강간'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성'의 차원에서 기술됨으로써, '성범죄'의 입장에서 조명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의 성욕에 대한 남성적 시혜의 관점에서 기술되거나, 여성의 '사랑'을 자극하고 촉발시키는 기회로서 설득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서 강간과 겁간을 다룬 이야기들 중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을 기술하고 상황을 설명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강간'과 '간통'의 상황에서 야기되는 남성의 성적 욕망과 쾌락적 해소만이 언급될 뿐, 여성이 경험하는 육체적, 심리적 공포나 상처는 외면하고 있다.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 실린 '강간'의 일화들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담론을 구성한다.

첫째는 강간 행위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조명한 경우이다.²⁰⁾ 이 경우 피해자 여성은 강간에 저항하거나 죽음으로써 대결하고, 가해자 남성은 법적

인 처벌을 받는다.

① “(...) 그래서 옷과 허리띠로 그녀의 사지를 묶고 강간을 하고는 묶은 손발을 풀어주었습니다(乃以衣帶 縛其四肢而強姦之 仍解其縛).” (『기문총화』 3:312)

② 어느날 밤 옆집에 살고 있는 모감이 담을 넘어 침실로 들어와 억지로 겁탈하려 하였다. 과부는 죽기를 한하고 굳게 저항하니 모감이는 한칼에 과부를 찔러 죽인 뒤 그녀의 딸과 계집종도 함께 죽이고는 가버렸다(一日夜 隣居某甲 踰牆入寢內 欲強劫之. 寡女抵死牢拒 某甲一劊刺殺之 并殺其女與婢去). (『청구야담』 108화, p.478)

③ 겨우 음식이나 넣어주며 혼인날을 기다렸다. 원으로 하여금 겁간하게 하려는 심산이었다(僅通飲食 以待期日 將令守劫奸). (『설』 1권:25화, p.177)

강간 당한 여성이 자결하는 ①의 이야기는 성적 폭력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가해자 남성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의해 강간을 범한 욕망과 충동의 희생자로 조명된다. ②는 옆집 과부를 겁탈하려던 남자가 저항하는 과부와 그 딸, 계집종을 살해하는 내용이다. 강간 사실이 개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은 성범죄의 폐쇄성을 방증한다. ③에서는 당숙이 질녀를 이용해 출세하려고 원님에게 질녀를 겁간시키려다가 실패한다는 내용이다. 질녀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원님과 혼인을 허락했으나, 골방에서 풀려나자 당숙을 향해 칼을 휘

20) 『실록』에도 임신 중의 기녀를 강간하려다 용하지 않자 살해한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를 파직시킨 사례가 전한다(영조 10년 1월 10일(정해), 『실록』 42집 p.410). 또한 강간의 위기에 저항한 처녀가 자신이 간통한 처녀라고 소문이 나자 상대 남성을 살해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다. 이 여인은 절개를 인정받아 용서받았다(영조 19년 11월 23일(임인), 『실록』 43집 p.118). 이는 당대에 강간이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민의 여자를 강간한 이의천의 탄핵을 기각한 기록도 전한다(경종 1년 9월 10일(무술), 『실록』 41집 p.173).

두름으로써 범법자가 된다. 결국 이 사건은 여인의 남편에게 전달되어 여인이 풀려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 이야기들은 '강간'을 분명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피해자 여성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가해자 남성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의 경우에는 여인을 겁간의 위기에 처하게 만든 신의 없는 남편²²⁾을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여인을 겁탈의 위기에서 구한 시혜자이자, 정의의 심판자로 조명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 서술 시각을 견지한다.

야담에 나타난 '강간'이 처리되는 두 번째 방식은 피해자 여성의 입장을 소거시킴으로써 강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성욕의 자연스러운 표출로 이해함으로써 합리화하는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의 인권을 차등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강간을 정당화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나 신분이 낮은 여성 인물인 것이 대부분이다. 조선시대에 과부 보쌈이나 여종에 대한 성행위의 요구는 묵인되는 것이 상례였는데, 특히 여종은 생살권을 쥐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가 어려웠다.²³⁾

④ 그 중 부유한 종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름은 향단이었고, 나이는 열아홉으로 아름다운 자태와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선비는 그 제집아이를 들리어 몹시 총애하느라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몰랐다(士人見一奴富饒者女 名香丹 年十九 有姿貌. 納之甚寵 忘其歸). (『청구야담』 41화, p.202, 204)

- 21) ①의 가해자는 사형 선고를 받고, ②에서는 장살(杖殺)되며, ③에서는 파직(원남)되거나 유배(당숙 부자)됨으로써 범법자로서의 댓가를 치룬다. 그러나 『실록』에는 강간에 저항하다가 음독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가해자 남성에 대해서는 '강간 미수에 해당되어 장류(杖流)해야 하나 너무 가볍기 때문에 감사도배(減死島配)하라고 명'하는 기록이 전한다(영조 13년 9월 23일(무신), 『실록』 42집 571면).
- 22) 여인의 남편은 여인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고, 당숙은 이를 빌미로 질녀에게 원남과의 혼인을 강요했다. 여성이 경험한 강간 위기의 근본적 계기는 '남편의 부재'라는 상황적 조건에 기인했던 것이다.
- 23)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2권, 청년사, 2001, p.36.

⑤ “제 남편은 사냥을 하러 나가서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완은 그녀와 더불어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오더니 이완을 결박하고 죽이려 하였다. 이완이 천천히 말하였다. “보아하니 자네도 예사 사내는 아니로군. 그런데 계집 하나 때문에 장사를 죽이려 한단 말인가?” (“吾夫出獵 獨守空閨耳。公因與之押 與之共宿。夜半有人携一鹿來 縛公欲殺。公徐曰, “看汝亦非庸人. 乃以一女殺壯士耶?”) (『기문총화』5:533, p.273)

⑥ 그녀는 본성이 여리고 약하였다. 게다가 자비의 마음도 생겨 몸을 침상에 내던지며 말했다. “마음대로 하시오.” 드디어 엽복은 마음껏 음탕하게 회롱하여 추악한 형상을 지극하게 하였다. (...) 그녀는 그때부터 종일토록 혼잣말을 하였는데, 대개 ‘사자(使者)’ 라는 말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루는 그녀가 새벽에 일어나 나가더니 문득 간 곳을 알 수 없었다(女性本荏弱. 且生慈悲之心 投身于床曰, “任汝爲之.” 業福乃恣意淫弄 極其醜狀. (...) 女自是竟日獨語 皆不出使者設也. 一日晨起 忽不知所之). (『청구야담』 115화, pp.495-498)

④에서 여자 노비를 ‘총애(寵愛)’ 한 주인 남성의 행동이 상호성에 근간한 ‘사랑’이라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여종과의 성적 관계는 주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로서 기술되었다. 당사자인 ‘향단’조차 그를 섬겨야 할 주인으로 간주하여, ‘희생’을 자처한다.²⁴⁾ ⑤에서도 사냥꾼의 ‘첩’을 강간한 남성이 그 남편에게 ‘계집 하나 때문에 장사를 죽이려 한단 말인가’라고 대응함으로써 남성의 인권적 우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④와 ⑤의 남성 인물들은 신분이 낮거나 남편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섹슈얼리티를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신분이 낮은 여성 계층, 예컨대 과부나 여종, 기생에 대한 강간을 노총각이나 상처한 홀아비, 과객 등의 ‘대

24) 여기서 여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 간의 성적 관계의 의미는 사실상 모호하다. 그러나 성적 관계가 일방적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이 항목에서 다루었다. 해당 이야기의 분석에 관해서는 줄고, 「불멸의 존재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귀신’과 ‘차실’ 일화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 12집, 열상고전연구회, 2002 6), pp.331-333 참조.

체용 성'으로 인식하기도 했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위에서 남성 인물들은 자신의 성적 충동에 순응하는 형태로 여성 인물과 성적 관계를 맺지만, 상대방의 의사는 배려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죄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여성들은 육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공포와 수치심 등을 경험했을 뿐더러, 이를 계기로 자신의 생물학적이고 사회적 삶의 근거를 박탈당하거나, 자아를 상실하기도 했다. ⑥에서는 미성년²⁵⁾의 여성이 강간 당한 이후 실성하여 집을 나간 이야기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주체의 죄의식이나 처벌에 대한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몰이해의 시선을 반영한다. 「미인을 잃고 기박한 운수를 탄식하다(失佳人數歎薄倖)」라는 제목은 가해자의 관점에서 미인을 잃은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서, 상처 입은 미성년 여성의 입장을 소외시키는 파행성을 보여준다.

야담에 나타난 '강간'이 처리되는 세 번째 방식은 강간과 화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처리되어 남성의 강간을 합리화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여성 인물이 남성의 '강간'을 '천생연분'이나 '인연론'으로 수용하여 폭력성 자체를 무마시키기도 한다.

야담에서는 강간을 당한 여성 인물들이 이 문제에 관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일은 극히 드물며, 내개는 강간 행위자와 혼인함으로써 사회적 생존을 연장해 나간다. '섹슈얼리티'가 폭력적으로 행사되는 '강간'을 '사랑'의 가능성 속에서 타진하게 만들거나 '화간(和姦:간통)'으로 수용하게 만든 것은 성 행위 이후에 곧잘 혼인으로 귀결되는 남녀 관계의 '기이한' 진전 때문이었다.²⁶⁾ 더구나 '혼인'을 자청하는 피해자 여인의 태도는 남성의 성적 폭력을 상호적 '사랑'으로 판단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

25) 피해자 여성은 아직 '계년(笄年:여자가 처음으로 비녀를 꽂던 나이로 보통 15세 정도)'에도 이르지 못한 미성년이다. 따라서 그녀에 대한 남성 인물의 성적 유혹이나 희롱 행위는 조선시대의 법률에 따르면 분명히 불법 행위에 속한다. 조선시대의 법률에는 12세 이하의 어린 소녀를 간음한 자는 비록 화간이라고 해도 강간으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pp.182-183).

었다. 그 결과 남성 인물들의 성적 방종이나 폭력적 행사는 여성 인물이 '사랑'을 '발견'하고 '필연적 운명'을 깨닫는 이야기로 담론화됨으로써, 여성들의 신체적 자율성을 공동화(空洞化)하고 있다.

⑦ 만옥이 손으로 만져보니 젊은 미녀였다. 탕정을 이기지 못하여 급히 운우 지락을 즐겼다. (...) 그녀가 만옥을 대하여 말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천생연분인가 하옵니. 이제는 어찌하겠습니까?"(晚玉以手摸之 乃年少美女也. 不勝蕩情 急說雲雨之樂. (...) 其女對晚玉曰, "事已至此 此亦天緣. 今無奈何?"). (『양은천미』 11화, pp.44-96)

⑧ "(...) 길에서 소복(素服)한 여인(女人)을 만나거든 반드시 그 여인(女人)을 얻어 가(可)히 죽기를 면(免)하고 과거(科擧)를 하리라." 하더라. (...) 그 여자(女子)가 듣고 잠잠(潛潛)하던지 양구(良久)에 길이 한숨지어 가로되, "(...) 이도 또한 천생연분(天生緣分)이요, 또 사생(死生)이 천명(天命)에 매이었으니, 어찌 이렇게 가벼이 죽으리고." 드디어 동침(同寢)함을 허락(許諾)하고 또 가로되, (『주해 청구야담』 I 권:권지육 11화, pp.452-455)

⑨ 그 처녀는 비록 매우 당황하고 놀라고 겁이 났으나, 여자의 유약한 자질로 어찌 강장한 기운을 당해낼 수 있으리오. 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짹하자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 이것이 동방의 화축을 밝히는 한마당의 기회였던 것이다. (...) "그러나 저는 수절과부로서 까닭도 없이 이웃집

26) 실제로 강간은 조건(刁姦:상대방을 유혹하여 집으로 유인해 공공연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나 화간(和姦:간통)과 잘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인 처벌이 모호하였으며, 그런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했다(정성희 (1998), p.140).

『실록』에도 강간죄로 기소된 김치량을 논핵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화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입금이 "그 일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공해(公)에서 강간한 데 대한 율문(律文)이 없으며 또 한진은 분디 창기이다. 처음에는 협박을 당하였으나 끝내는 스스로 정절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니, 강간으로 논할 수 없다. 이는 바로 율문에 이른바 강제로 끌려 여기에 왔으나 화옹한 것에 해당되니, 죄를 마땅히 감등시켜야 한다."고 여기고, 이에 김치량은 그 이름을 사판에서 삭제한 다음 먼 변방에 정배시키게 하였으며(하략)' (영조 24년 3월 23일(정미), 『실록』 43집 p.287)

양반과 더불어 손을 잡고 들어가 옷까지 바꾸어 입었으니 평생 지켜오던 정절은 이미 훼손하여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사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其處女雖其滄悅驚愕 以若柔弱之質 怎當強壯之氣 不敢發聲 俯首從命 偶是東房花燭一場之期也. (...)) “然吾已守寡之女 無端與隣班携手而入 換衣而着 平生貞節毀敗無餘. 今則將與進士主 同居以生.”) (『청구야담』 100화, pp.451-455쪽)

⑦의 남편은 순라병을 피해 산중에 숨어들었다가 자신의 ‘첩’과 동침한 남성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아내를 그에게 양도한다. 이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 부각되어 두 남자 사이에서 교환물로 처리된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첩’도 ‘강간’을 ‘상처’로 인식하지 않으며, 남편이 자신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이를 ‘천생연분’으로 수용한다. 이 여인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존’의 원칙이며 ‘생활’의 논리였던 것이다. ‘시’의 형식으로 이들의 관계를 논평한 서술자도, 이들의 인간 관계를 ‘풍류’라는 유희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²⁷⁾ 여성에게 가해진 성적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소거시키고 있다.

⑧에서도 과거 급제를 위해서는 강간도 불사하는 남성적 욕망을 비판하는 대신, 희생자 자신이 이를 ‘몽소’에 부합하는 ‘필연적 운명’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을 통해 남성의 행위를 합리화하였다. 이는 ‘과부의 개가 금지’가 시행되던 조선시대에 개가를 위해서는 범망의 틈새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강간하려 한 남성을 비난하거나 그의 요구에 저항하는 대신, 이를 하늘이 정한 ‘운명’으로 해석하고 개가의 ‘기회’로 포착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이다.

27) 기이한 사람은 풍류랑 속에 많으니
 첩을 양보하고 돈도 주며 함께 잔을 들었네.
 오늘 은혜를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처지라지만
 뒷날의 재앙을 모면케 해줄 줄을 어찌 알리오?

奇人多在風流郎
 讓妾酬金共舉觴
 今日施恩不報地
 那知後日免身殃(『양은천미』 11화, p.97)

이러한 것은 ⑨에서와 같이 남성의 강간 행위를 ‘동방의 화촉’이라고 미화하는 서술자의 논리에도 반영되어 있다. ⑨는 강간의 위기에 처한 과부를 도와주려던 남성이 오히려 가해자의 딸을 강간한다는 내용으로, 그가 ‘두 첩’을 얻고 ‘부’를 획득한 것으로 마무리됨으로써, 그의 처신에 대한 반성을 결락하고 있다.

⑩ 별감이 즉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선 촛불에 비춰보니 그야말로 국중 일색이었다. 옷을 풀고 침석에 나아가 운우지락이 바야흐로 무르익었을 때 그 여자가 깨닫고 외쳤다. “누군데 이런 비례한 짓을 하오?” “임자는 지난번 눈이 마주친 사람이 기억 안나오?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하늘이 주신 연분이 아니겠소? 이웃 사람 몰라게 맙시다.” 새댁은 울며, “당신이 꽃을 탐내는 욕망으로 제 월장(越牆:정식 혼담이 없이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의 수치를 돌보지 않았으니 한되고 부끄럽소.” 이에 별감은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여 그 후로 왕래가 잦았던 것이다(別監卽爲開戶入來 點燭試看 則眞是國色也. 解衣就枕 雲雨方濃. 娘覺而大呼曰, “何人非禮如此耶?” 別監曰, “子不記向日撞面人乎? 事已至此 亦是天緣. 願無隣里驚動.” 娘泣曰, “君以探花之慾 不顧妾之越牆之羞 可恨且愧.” 低頭無言. 別監愛而敬之. 此後往來頻頻). (『이』(상):『재회』, p.326/452)

⑪ 부인은 어둠을 무서워하여 자주 노파를 불렀다. 노파는 “이 늙은이가 같이 자 드리지요.” 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침상으로 올려 보냈다. 부인이 노파인 줄 알고 이불을 들추고 그 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할머니 몸이 이처럼 부드러움군요.” 그 사람은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몸 위로 올랐다. 부인은 이미 마음이 취하고 정신이 어지러워졌으므로 이렇게 되도록 자세하 알아볼 겨를도 없이 그의 경박함에 몸을 맡겼다. 그 사람은 원래 탕자의 숨씨에 능숙한지라, 난새가 엮어지고 봉새가 거꾸러질 듯이 그 취미를 꼭진히 하여 부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희롱했다(婦畏暗黑 數數呼媪. 媪曰, “老身當同榻作伴耳.” 乃引其人登婦床. 婦猶以爲媪也. 啓被撫其身曰, “姥體柔滑如是.” 其人不言. 纔進被裏 驚地騰身而上. 婦已心醉神蕩 到此不暇致詳 任他輕薄. 其人素慣宕子手段 顛鸞倒鳳 曲盡其趣. 弄得婦人魂不附體.). (...) 부인은 그들의 수법에 빠져서 마침내 버

릴 수가 없이 되었다. 서로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보다 더했다(婦業墮術中 遂不能捨. 相愛逾于夫婦). (『동야회집』 권지십사 11화: pp.634-635)

위의 ⑩과 ⑪은 노파를 돈으로 매수하여 강간 기회를 얻은 남성이 여인과 '간통' 관계를 맺는 내용이다. 이 여성들은 모두 기혼자로서, ⑩의 여성은 술에 취하여, ⑪의 여성은 성적 쾌락에 설득되어 '강간'을 계기로 '분륜'의 관계를 지속한다. ⑩의 남성은 자신의 행위를 '하늘이 내린 연분(天緣)'으로 합리화하기도 했다. 이 여인은 수치심을 느끼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제안을 수락한다. ⑪에서는 희생자 여성이 성적 쾌락에 길들여지는 과정을 부각시킴으로써,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희석시키고 있다. 특히 ⑪은 여성이 이를 계기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성적인 주체의 자리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눈앞의 쾌락에 빠져, 피해자 역시 희미하게나마 욕망을 즐긴다고 생각해 버림으로써 그 행위가 지닌 폭력성을 외면'²⁸⁾해 버리는 관찰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이 이야기들의 남성 인물들은 (첫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간 행위를 폭행이나 범죄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는다. 이들 성폭행으로 간주하여 속죄와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히려 소수로 제한된다. 남성에게 강간당한 여성은 이를 숨기거나, 혼인을 통해 보상받으려 했으므로, 가해 남성이 처벌되는 일은 사실상 드물었다.

조르주 비가렐리는 앙시앙 레짐의 시대의 강간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인식 세계는 폭행을 가한다는 의식의 부재와 희생자 쪽에서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확신'으로 특징지어지며, 가해자의 이런 인식 세계는 "도발은 여성의 몫이라는 명제가 팽배해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힘입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법정을 압박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⁹⁾ 이러한 상황은

28) 조르주 비가렐로(2002), p.42.

29) 조르주 비가렐로(2002), p.43.

18·19세기의 야담집에 수록된 강간 일화에 나타난 작중 인물들의 사회적, 법적 인식과 유사하다. 더구나 위의 세 가지 경우에서 있어서 '기생' 과의 성적 관계는 예외적인데, 기생의 육체적 주체성은 행사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관리가 기생에게 요구하는 성 관계는 '수청' 으로 용인됨으로써, 폭력성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³⁰⁾

야담의 장르적 속성상, 삼인칭 객관적 시점을 취하는 이야기 형식은 실질적으로는 야담 향유층의 '입장' 과 '시선' 을 '객관적인 사실' 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서술 효과를 파생시켰다. 이는 야담 향유층의 인식을 '자연적' 이고 '사실적' 인 것으로 전달하는 서사적 힘을 행사한다. 위의 이야기들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육체적 폭력성이 사랑의 담론이나 혼인담으로 왜곡되거나 남성의 행운담이나 무용담으로 기술된 것, 그 과정에서 희생자 '여성' 의 입장에 대한 서술이 배제된 것은 이러한 서술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이야기의 생성 공간이 남성에 의한 성의 폭력적 행사를 묵시적으로 용인해 왔음을 보여준다.

2) 위반과 금지의 사랑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서 남녀간 섹슈얼리티의 관계가 상호성의 의미 영역 안에서 행사되는 경우, 이는 '사랑의 담론' 혹은 '애정담' 을 구성한다. 그런데 미혼 여성, 혹은 기생과 남성의 관계가 '사랑' 으로 옹호되는 데 비해, 기혼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불륜' 이라는 불온한 대상으로 호명된다. 남성 인물의 기혼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섹슈얼리티' 를 매개로 한 관계가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역사적 상황에 기인한다.

'간통(姦通)' 이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³¹⁾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사랑이 전제되는 경우일지라도, 사회가 합의한 '부부' 라는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로 지탄받을 뿐더러, 사회적 처벌의 대상이 된

30) 이에 관해서는 줄고(2002@), pp.55-77 참조.

31) 신기철·신용철 편(1989), p.58.

다. 이는 개인의 육체나 개인간의 사랑의 관계조차 '사회화'의 영역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통'의 논리는 근대에 이르기까지(최근까지도) 여성에게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었는데,³²⁾ 그 이유로는 가부장제의 제도 하에 자손을 낳는 여성의 순결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즉 섹슈얼리티가 남성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고 여성은 그 타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소유욕이 가세하여 약자인 여성에게 가혹하게 잦아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³³⁾

18·19세기의 야담집에서도 '간통' 서사의 경우, 이에 대한 비판은 당사자 양측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인물로 제한된다.³⁴⁾ '간통한 여

32) 로마 제국시대의 에픽테투스에 따르면 간통은 '도둑질'이었다. 이웃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은 마치 식탁에서 이웃에게 제공한 돼지고기를 빼앗아 먹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일로 간주되었다(폴 벤즈, 『사생활의 역사』 1권, 주명철·전수연 역, 새물결, 2002, p.103).

고대 그리스에서 남편은 아내 외에 첩실, 남녀 노예, 남창과 창녀, 남녀 애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나, 아내는 남편 이외의 남자로부터 격리되었고, 발각되면 엄한 처벌을 받았다(매릴린 엘튼, 『아내:순종 혹은 반항의 역사』, 이호영 옮김, 시공사, 2003, pp.58-59). 기독교 전통이 있는 서양에서는 간통 사범에게 신체형을 가했는데, 13세기 프랑스에서는 간통을 저지른 남자는 벌거벗고 길거리를 행진해야 했으며, 14세기 독일에서는 생매장당하거나 말뚝으로 찢리는 형벌을 받았다(같은 책, p.42).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부정한 아내를 불구로 만들거나 추방했으며, 아파치족의 경우에는 코와 귀를 베는 신체형을 기했다(같은 책, p.393).

33)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p.249.

19세기 프랑스의 경우에도 간통을 저지른 여자가 죽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간통을 저지른 남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남자끼리 공모하여 덮어주기도 했다. 여성의 간통은 가족의 가장 신성한 것, 즉 혈통적 합법성에 손상을 가져올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으나, 당시의 민법전은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인지청구'를 금지했고, 임신시킨 남자가 임신한 처녀와 결혼하는 것이 관습적인 도덕률이었다(미셸 페로 편, 『사생활의 역사』 4권, 새물결, 2002, p.196). 19세기 농촌에서 젊은 처녀들은 목동이나 주인의 성적 욕구의 대상이 되었고, 남자들은 정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들을 강간했다고 한다(같은 책, p.211).

34) 이와는 달리 『실록』에서는 사대부의 '간통'이 정쟁 담론으로 논의되기도 하며(예컨대 김춘택과 장희재 아내와의 간통사건에 대한 기록을 들 수 있다: 숙종 27년 11월 19일(임인), 『실록』, 39집 655면/ 숙종 28년 5월 27일(무신), 『실록』, 39집 683면./ 숙종 32년 9월 18일(계유), 『실록』, 40집 230면 등), 과부의 간통을 둘러싸고 시가와 외척이 반대 소송을 걸기도 하고(숙종 29년 7월 26일(경오), 『실록』, 40집 38면), 재산을 빼

자’의 남편이 그 아내를 살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등장하는데 비해, ‘간통한 남자’의 아내가 그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언급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당대의 불평등한 성적 인식이 서사 내용에 투영된 결과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불륜의 관계를 맺은 여인은 ‘음녀’라는 사회적 지탄을 감수해야 했을 뿐더러, 음행녀 명부인 「자녀안」이나 「유녀적」에 이름이 기재되어 평생 간음녀로 낙인찍히거나 관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여자들의 간통은 결혼 이전에는 파혼의 사유가 되었고, 결혼 이후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이에 비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비난의 대상으로 조명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장모와 간통했을 경우에만 이혼 사유로 인정받았던 것이다.³⁵⁾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서 ‘간통’이 담론화되는 지점은 여성 인물의 신분 여 따라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경우는 ‘관기(官妓)’나 ‘궁녀(宮女)’의 ‘사랑’을 간통으로 규정하는 이야기이다. 기적(妓籍)에 등재된 기생들은 관리들에게 유희 문화를 제공하는 의무를 강요받았으며, 때에 따라서는 ‘성’을 바쳐야 하는 책무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공적’인 의미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방 기생의 경우, 고을 수령의 수청을 드는 것도 묵인되는 것이 상례였으므로³⁶⁾, 기생의 육체는 사실상 사생활의 물리적 근거이자 주체적 삶의 근원이라기보다는 공적 영역의 수단적 매개이자, 이를 통한 사생활의 연명 통로로 간주되었다.

궁녀 또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국가에 차압당한 존재였으므로, ‘정조’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 의무였다. 조선시대의 법에 궁녀가 외부인 및 환관과 간통하면 사형을 받았으며,³⁷⁾ 정배(定配)되기도 했다.³⁸⁾

앗기 위해 상대를 모해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숙종 14년 5월 11일(임오), 『실록』 39집 144면), 실질적인 권력 다툼의 계기로 동원되기도 한다. 이는 섹슈얼리티의 정치 행위를 보다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사례이다.

35) 정성희(1998), p.139.

36) 정연식,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1권, 청년사, 2001, pp.20-21, 29.

① 이윤성이 그들의 불륜을 불문에 부친 것이나 장지함이 그들을 강에다 빠뜨린 것은 모두 체신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李之不問 張之沈江 俱爲得體云爾). (『기문총화』2:220)

② 새벽에 뒷간에 가는데, 통인이 몰래 정태화가 마음에 둔 기생과 더불어 침실에서 정을 통하고 있다고 비장이 급히 아뢰는 것이었다. 정태화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게 어찌 내게 보고할 일이더냐? 실은 내가 통인이 가까이 지내는 기생과 정을 통한 것이니라. 통인이 어찌 감히 내가 마음에 둔 기생과 간통을 하겠느냐?” 하고는 끝내 불문에 부쳤다(知印潛與其所昞妓 淫於寢房 裨將急告之. 公笑曰, 此其告我者耶? 我實淫其所押. 渠豈敢奸我所昞乎?). (『기문총화』5:545)

③ 선조 때에는 대궐 밖에 사는 궁녀와도 간통을 금하는 법이 있었다. 오성 부원군 이항복이 도승지로 있을 때, 그의 집 청지기가 이 법을 어겨 장차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다(宣廟朝有放出宮女交奸之律. 鰲城爲知申事 時其僮從犯此律 將陷重罪 鰲城問之). (『기문총화』5:437)

위의 사례는 ‘관기’와 ‘궁녀’의 개인적 사랑을 ‘간통’으로 담론화한 이야기들이다. ①은 의무적으로 관리의 수청을 들어야 하는 관기가 개인적으로 한 사랑이 ‘간통’으로 취급되어 그가 후임 관리에 의해 처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지방의 기생은 대개 관노나 통인, 사령 등 하급 관속들을 남편으로 두는 것이 상례였으므로³⁷⁾,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통인은 사실상 기부(妓夫)³⁸⁾였던 셈이다. 그러나 관기는 지방으로 부임한 관찰사나 어사, 또는 사

37) 정성희(1998), p.184. 실제로 숙종 42년 8월 10일(정유)의 기록에 위인과 간통하여 아들을 낳은 궁녀가 그 간부(奸夫)와 함께 처형된 사례가 전한다(『실록』 40집 p.610).

38) 『실록』에는 방자인(房子內人)인 궁녀가 내관(內官)과 간통하다 발각되어 정배된 기록이 실려 있다(숙종 27년 3월 37일(갑인), 『실록』 39권, 594면).

39) 정연식(2001), p.35.

40) 고종때 박제형(朴齊炯)의 저술 『근세조선정감(近世朝鮮政鑑)』에 따르면 기녀의 남편은 각전별감(各殿別監), 포도군관(捕盜軍官), 정원사령(政院使令), 금부나장(禁府羅將), 궁가척리(宮家戚里)의 겸인(僱人) 이외에는 기부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이재곤 옮김, 동문선, 1992, p.104)

신 등 어명을 받는 고관들의 잠자리 시중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남편을 둔 수청기생은 사생활과 공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관기의 사랑이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금지’였고, 제도적으로는 명백한 ‘위법적’ 사항이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생과 기부부의 성 관계를 ‘간통’으로 간주하고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관리의 시선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②는 기생의 간통을 묵인하는 것이 사대부의 ‘도량’으로 간주되는 관점을 보여준다. 즉 기생의 사랑은 명백한 ‘간통’이었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용인되었던 것은 권력자의 개인적 성격과 인품에 좌우되는 예외적 사항이었던 것이다.

③은 켈방 궁녀와 사랑한 청지기를 살리기 위해 이항복이 성욕의 생리적 특성을 설득하는 내용이다. 그는 궁녀와 청지기의 관계를 정신적인 교감이나 육체적 친밀성의 의미에서 옹호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으로 해석했다. 그 과정에서 궁녀의 사랑이나 성욕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것은 이 이야기 역시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담론화 된 결과이다.

이와 같이 관기와 궁녀의 사랑을 ‘간통’으로 담론화한 이야기들은 관기들의 개인적 삶을 사회적으로 관리했던 제도적 모순에 근간한 것으로서, ‘사랑’이 제도적 차원에서 통제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개인적 사랑을 차압당했던 조선시대의 ‘관기’와 ‘궁녀’는 ‘사랑’이라는 사생활의 영역마저 위법 행위로 ‘해석’됨으로써 사회적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전하는 ‘간통’의 사례들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생산한’ 범법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유부녀의 불륜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이야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선시대의 법률은 서로 다른 신분간의 간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동일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진 남녀보다 다른 신분이나 지위의 남녀일 경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특히 천민 남자와 양인 여자와의 관계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양인 남자와 여종과의 간통은 일반 화간율보다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자기 집의 여종과 관계한 경우에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혹 문제가 되더라도 천첩으로 삼

으면 그뿐이었다. 양반 남자와 여종간의 간통은 공공연한 사회적 관행이었으므로 2품 이상의 대신과 관계한 여종이 자식을 갖게 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 양인화할 수 있는 규정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양반 여자의 간통은 같은 신분과의 관계라도 중형을 받았다.⁴¹⁾

④ 삼년상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니 그 아내 황씨가 실행하여 한 계집아이를 낳았다. 문유채가 그녀를 쫓아내니, 황씨는 도망하여 친족의 집에 숨었는데, 황씨의 집안에서는 문유채가 황씨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관가에 가서 그를 고발하였다. (...) 문유채의 억울함을 알고 황씨녀를 기포(讖捕)하여 장살(杖殺)시키고, 문생은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다(服闋始歸 則妻黃氏 失行產一女 文生黜之 黃仍逃匿親族 黃家疑生殺之 詣官告訊. (...) 時知其冤 讖捕得黃女 杖殺之 生遂放釋). (『청구야담』 103화, p.462)

⑤ “나는 예사 사람이 아니라 산적이라도. 여러 해 동안 이런 집을 온 골짜기에 지어 도마다 있소. 그곳에는 반드시 미인 한 사람을 두었는데, 저 계집은 틈을 타 아까 죽은 사내와 몰래 간통을 하고 도리어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소. 그래서 내 부득이 아까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이요. 비록 저 사내는 죽었으나, 이 계집이야 어찌 차마 죽이겠소. 이 산골까지와 저 계집을 그대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진정 이 때문이었소(吾非常人 乃是綠林豪客也. 累年排置如此屋全一壑 道道有之. 必有一介美娥. 而彼娥隨隙 潛奸於俄者所死男子 反欲害我 非一非再故 吾不得已有俄者光景也. 雖殺彼客 彼娥豈忍殺之. 以此丘壑與彼娥許君者 良有以也).” (...) 임경업이 한결같이 머리를 짓자, 나무꾼이 말하였다. “그만 두게, 그만둬!” 하고는 즉시 칼을 한번 휘둘러 그 미인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林公一向掉頭 樵夫曰, “已矣已矣.” 卽旋劒一揮 斷彼娥之頭.). (『기문총화』 2:255)

⑥ 선비는 그 뒤를 따라가서 창 틈으로 들여다 보았다. 그 중이 그녀를 끌어안고 별별 음란한 짓거리를 다했다(則其和尚摟抱其女子 淫戲無所不至). / 그리고

41) 정성희(1998), pp.146-147.

는 다시 중과 더불어 한바탕 음란한 짓거리를 해대더니 벌거벗은 몸으로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서로 껴안고 눕는 것이었다. 이때 선비는 처음 때 간음하려던 마음이 구름과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고 분개하는 마음이 감절로 일었다(又與僧一場淫戲 而裸體同入衾中 相抱而臥. 此時 儒生初來欲奸之心 雲消霧散 而憤慨之心倍激矣). / “음탕한 아내가 그 중을 보고 탐을 내다가 드디어 그 중과 간통을 하였습니다(淫婦見而欲之 遂與通奸矣).” (『기문총화』 2:205)

⑦ 보아하니 자네도 예사 사내는 아니로군. 그런데 계집 하나 때문에 장사를 죽일 한단 말인가(看汝亦非庸人. 乃以一女殺壯士也)?” (『기문총화』5:533)

⑧ 공이 젊었을 때 향간의 한 여자와 서로 좋아하였다. 매일 밤 몰래 가서 그녀의 남편이 없는 틈을 엿보아 보면 몰래 여자와 정을 통하고 돌아왔다(公少時有與一間婦相好者 每夜潛往瞰其夫不在 輒與之 歡樂而歸). (『양은천미』 12화, p.100)

⑨ 이윽고 석반(夕飯)을 드리고 밥먹은 후(後)에 인(因)하여 촛(燭)을 밝히고 상대(相對)하여 담소(談笑)를 이윽히 할 새 어깨를 겹치고 무릎을 대어 이미 임의(任意) 희학(戲謔)하다가 서로 더불어 취침(就寢)하니 그 곡절(曲折)을 알지 못할러라(『주해 청구야담』 I 권:권지오 6화)

위에서 행위 당사자를 처벌하는 주체는 관리(④)와 여성 인물의 남편(⑤), 혹은 그 여자를 강간하려던 다른 남성(⑥)이며, '처벌' 을 받는 대상은 '여성' 인물(④-⑥)로 제한된다. ⑦에서는 강간, 혹은 간통을 한 아내의 처리 문제가 소거되어 있으며, ⑧에서는 여자의 남편이 간부를 쫓아오지만, 간부가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⑨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간부를 모두 '용서' 하는데, 후일 그가 간부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④는 아내의 외도를 목도한 문유채가 도리어 아내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가한다는 내용으로, '아내' 의 입장은 배제된 채, 남편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⑨에서는 '간통' 을 하는 여성의 적극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하는 여성의 심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혹하는

여성을 관찰하는 남성적 시선에 집중하고 있다.

⑤는 '남편' 이 아내의 '부정' 을 단죄할 수 있는 사회적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용인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법률에 따르면 유부녀와 화간한 자는 장형 90대의 처벌을 받았으며, 간음의 현장에서 남편이 간부를 죽였을 경우 '불응위율(不應爲律)' 에 따라 장형의 처벌을 받아야 했다.⁴²⁾ 그러나 ⑤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의 간통' 을 단죄할 수 있는 서사적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아내의 성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 했던 야담 향유층들의 인식의 일단을 반영한다.

⑥은 상중(喪中)의 여성을 '간음' 하려던 선비가 여성의 '음란한' 장면을 '옛보고' 상대 남성⁴³⁾을 쏘아 죽인 뒤, 여인에게 살해되었던 전 남편을 꿈에서 만나 급제한다는 이야기이다. 여인의 간부를 살해한 선비도 처음에는 여인을 간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여인의 '간통' 을 목격한 뒤 그에 대한 처벌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서사 내적으로도 이 선비의 행동을 둘러싼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인에게 살해되었던 전남편이 간음의 의사를 갖고 있던 선비에게 '보상' 을 내림으로써, 선비의 행동은 정당화된다.

⑦과 ⑨는 자신의 아내와 간음한 정부를 용서해 준 남편이 후일 그의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으로서, '아내' 나 '정부' 가 남성들간의 이해 관계에 의해 교환물로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서 '여성' 의 육체를 매개로 한 남성들의 계약 관계는 '의리' 로 변용되어 설득되며, '여성' 의 육체가 주체로부터 소외된 채 교환되는 과정에 대한 반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42) 정성희(1998), p.181, p.187. '불응위(不應爲)' 란 무릇 당연히 해서는 안될 것을 하는 범법행위들을 말한다.

43) 이 이야기에서 여인의 간부로 등장하는 남성의 신분은 승려이다. 조선초기 법전 『경제육전』에서는 중이 과부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간통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더러,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면 실절(失節)하여 정조를 잃은 것으로 논죄한다고 되어 있었다(정연식(2001), pp.100-101). 또한 조선시대는 예법을 존중했던 만큼, 상중에 있으면서 범간한 자는 범간죄에 죄 2등을 가중하여 장형 1백 대와 함께 유배 3천 리의 형벌을 받았다(정성희(1998), p.184).

위의 이야기들에서 유독 여성의 ‘간통’ 만을 화제로 삼으며, 간통한 아내나 그 정부에 대한 사형(私刑)을 용인한 것은 모두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해 기술된 결과이다.⁴⁴⁾ 남성에게 아내의 간통은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뿐더러,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⁴⁵⁾ 아내의 간통에 준엄하게 대처하는 것을 남편의 특권인 것처럼 기술하거나, 이를 관용하는 자에게 인격자의 명예를 선사하는 것들은 ‘간통’이란 전적으로 남성적 권위와 가부장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간통을 기술하는 관점은 그 경위와 과정, 직·간접적인 계기에 대한 서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과적인 음행’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간통’이 남녀간의 상호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쪽에 비판의 시선이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자신의 음행에 대한 자각적 반성이 수반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 데 비해, 여성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반성의 부재가 아니라 반성 기회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반성’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남편이나 다른 남자에 의해 처벌되

44) 이와는 달리 『실록』에는 간통한 유부녀를 간부와 함께 처형한 사례도 기록되었으며 (경종 1년 11월 26일(계축), 『실록』 41집 p.184), 남편이 기생과 간통하자 그 아내가 기생을 살해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다. 상소자는 간통한 남편을 파직시키라고 제안했다(영조 6년 9월 5일(신미), 『실록』 42집 p.233). 그 외에도 과부를 임신시킨 남자를 적발하여 처벌을 요청한 기록이 있고(영조 7년 1월 7일(신미), 『실록』 42집 243면), 과부와 간통한 남자가 자살하거나 떠느리와 간통한 남자가 참형당한 기록(영조 10년 7월 22일(을미), 『실록』 42집 p.447), 부자 과부와 간통한 관리의 비리를 고발한 사례(영조 13년 9월 20일(을사), 『실록』 42집 p.570), 간통한 여자가 노비로 전락해 귀양 가고 남자도 귀양간 사례(영조 33년 5월 23일(계축), 『실록』 43집 p.649)도 전한다. 이는 실제로는 간통한 남성에 대한 사회적 처벌의 요청이 있었고 이것이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45) 다만 야담에 수록된 ‘간통’ 이야기들이 인척간의 사례를 다루지 않은 것은 이것은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실록』에는 인척간의 간통 관계 및 처벌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예컨대 사족의 딸이 형부와 간통하여 둘 다 사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다: 영조 33년 11월 18일(병오), 『실록』 43집 p.669).

기 때문이다.⁴⁶⁾ 또한 유부녀에 대한 성적 충동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남성일 지라도, 그 여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도하는 경우, 두 남녀를 처벌하는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도덕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그가 경험하는 자기 모순과 분열성에 대한 지적이 배제된 것은, 여성의 음행이 남성의 부적절한 성 충동의 표현보다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4. 결론

18·19세기의 야담집에 수록된 '강간'과 '간통'의 서사는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남녀 간의 감정적 교류에서 나아가 이것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 및 그들이 기반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구현한다.

해당 시기의 야담집에서 강간은 명백한 범법 행위로 간주되었지만, 피해자 여성의 입장을 소거시킴으로써 이를 정당화하거나 성적 충동을 긍정하면서 이를 '사랑'으로 호도하고, 상호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폭력성을 희석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당대적 지배 이념에 포섭된 서술 주체와 서술 시각의 권력성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폭력의 희생이 되는 대상들은 신체적 약자로 제한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 여성이 강간을 천생연분이나 인연론으로 수용하는 과정은 여성의 사회적 생존을 위한 행위가 '사랑'이나 '운명'으로 환치되는 형식을 통해 여성 자신의 신체가 공동화되고 소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부부 관계 이외의 성적 교류나 쾌락을 중심으로 한 남녀관계는 개

46) 또한 이러한 과정은 '사랑'과 '성'이 사회적으로 도덕적 제재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음을 보여준다.

인적 '사랑'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범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당사자 여성에게 처벌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적 사생활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사랑'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었음을 입증하며, 성에 대한 불평등한 인식이 지배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사생활의 영역을 차압당한 '관기'나 '궁녀'의 개인적 사랑은 '간통'이라는 불명예의 대상으로 지목됨으로써,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사랑의 경험'을 '범법'의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서사적 담론은 주로 야담의 주요 향유층이었던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기술된 결과로서, 섹슈얼리티가 일방적 행사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던 여성의 음성이 배제된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서술 시각에 의해 통제되는 이야기의 논리는 현실의 특정한 세계 인식의 내용을 문학의 형식으로 향유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취향과 유희의 소비 수단으로 설득하는 문화적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 필자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

Abstract

sexuality as a relationship : sex, love, power
- concentrating on the 'rape' and the 'adultery' narratives of
yadam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Choi, key-sook

<Summary>

The 'rape' and 'adultery' narratives in the collection of yadam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raise questions in argument about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man and woman through the sexuality.

The rape in some stories is regarded as the obvious criminal assault, but in the other stories, it's meaning is altered and transformed into love. In such processes, a woman's point of view is omitted. In such cases, the rape is described as a sexual relation by mutual consent and the meaning of violence is weakened. It show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narrative power which is controlled by the dominant ideology in those days. In these narratives, the weak, including the physically and socially weak woman get sacrificed to the sexual violence. The victimized woman regard a rape as a destiny to maintain their own social life. It shows that woman's body is neglected and lose substance in the violent sexual relations.

Meanwhile, except for the married couple, the persons who pursuit for sensual pleasures are regarded as the offender.

Especially, a kisaeng who is registered in government(官妓) and a lady of the court(宮女) are deprived of their rights of personal love. Their love is an illegal act, it is called a dishonorable ‘adultery’, not love.

Such narrative discourses are written by the third person objective point of view. Such a narrative style is respected the ideologies of the writers and readers of yadam, the man of noble class. This point of view of narratives discripts their political and social positions to objective things. This discriptive point of view performs the ‘power generating effect’ of discourses. As a result, woman in yadam were keep under noble man’s control. That is to say, woman characters in Yadam were objectivacated. The question at issue is that those narratives omitted such retrospective points and assert themselves as only interesting reading matters.

key word : yadam, the 18th and 19th Centuries, sexuality, love, rape, adultery, immoral intimacy, power

▶ 위 논문은 10월 15일 투고 완료, 10월 30일 심사 완료, 11월 15일 게재 확정